

체육공원내의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한 法制

Legislation of Building Outdoor Performance Hall with in Sports Park

이성호*, 김말애**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경희대학교 무용과**

Sung-Ho Lee(ecla@smu.ac.kr)*, Mal-Ae Kim(makj@kh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회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 중심어 : |야외공연장 | 문화예술 | 공연법 | 공연예술 |

Abstract

The performance-related industry has grown independently without being protected by the nation's great policy and legal boundary in the meantime. Even in the aspect of performance Act, the thoroughly pro-regulation policy on culture & art was taken while proceeding with segmenting the legislation rather than the freedom of performance art or the promotion of performance activity. Totally 17 case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abolition of scenario review system in January 1999 were fully abolished. Even 6 cases of regulations were steeply eased. Also, the importance of culture & art was recognized. Thus, to promote and support it in the governmental dimension, the substantial performance art policy system was adopted for training the performance art staff manpower and the national subsidy on performance hall. In performance art,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s' participation was imprinted such as stage lighting, sound, and stage machine. Accordingly, many regulations on performance art were all abolished except only the minimum issues for maintaining public order in about 5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Movie' wa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public performance' in 2002. Thus, the performance report system, which had been left institutionally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eternally abolished. Following this, the performance Act was changed into the legislation of the supporting · promoting policy, which reflected historical situation of needing to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welfare, from the regulation-centered Act.

■ keyword : | Outdoor Performance Hall | Culture & Art | Legislation | Performance Art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상상력과 독창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화, 발전하면서 점차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지역축제 개최와 문화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지역의 토착적인 문화와 창의성이 결합되면서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경제적 가치라는 연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지식산업과 함께 성장장 동력으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적 가치와 기능성을 무시한 채 경제적, 정치적 논리만을 강조하여 건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날 극장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에도 존재하며 극장의 소재지가 다양한 것처럼 극장 건물과 무대는 그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 천차만별”[1]이 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20세기 초에 극장이라는 문화공간이 등장하면서 정치와 공연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기록문화에서 근대적인 공연문화로, 문학의 시대로부터 공연예술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2]. 서구 유럽에 비하여 매우 늦게 체계화된 우리의 공연환경은 현대적 실내의 공연장이 건립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오늘날 까지 특성 있는 무대와 객석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짧은 역사와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현대 공연이 요구하는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도 사용방법 미숙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8년 올림픽 이후 시민들의 문화 참여 욕구가 증가되었고, IT산업의 발전과 문화산업 및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와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이

변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개념의 문화적 체험과 문화 사업에 따른 인프라(infra)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 문화수준의 향상은 21세기 문화산업으로 부상한 공연예술의 폭발적인 수용증가와 전문 공연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전문 공연 공간의 필요성 증가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공연시설이 건립되었고, 지금도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야외무대가 공연장으로서 하나의 문화시설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무대 규모, 장비 종류 및 수량, 무대의 각종 기계 장치 등 무대 시스템 부문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연관계자나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무대가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연장 설계의 기준이 되는 적합한 지침 없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진 각종 공연시설물로 인한 제작비용의 낭비,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작업의 복잡화 및 비효율성 이로 인한 작품제작에 따른 고비용 지출로 인해 공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6년 9월 일부 개정된 「공연법」의 내용에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동안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야외 공연장을 공연장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재해 대처 계획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공연장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재해 대처 계획에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토록 하였다[3]. 이것은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각종 문화행사들이 대거 기획되고 진행되면서 문화시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실내공연장에 대한 구조나 설비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지만 야외공연장에 대한 건축적 공간구조나 무대의 각종 설비에 따른 다양한 기능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 존중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고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공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야외공연장의 역할과 기능

을 공연자와 관람자의 문화예술 활동 측면에서 살펴보고, 야외공연장이 갖는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통해 적합한 문화공간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야외공연장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와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연장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천여 개가 넘는 축제가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면서 무대 공간형태도 매우 다양해 졌다. 무대와 객석, 조명, 음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분장실, 보관실, 편의시설 등의 공간을 갖춘 야외공연장이 건립된 반면, 한시적 행사를 위해 빈 공간에 임시로 설치하는 특설 야외무대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의 역할과 구조적 특성 그리고 체육공원이나 문화예술회관 내의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한 법적 고찰을 위해 문헌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등에 관하여 정리·해석하여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문화관광산업의 발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데 기본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바탕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II. 야외공연장의 환경체계

1. 공연장의 역할

문화예술분야가 21세기 소프트파워 역량을 좌우할 핵심적 공공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공연예술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문화복지기획단이 발족하면서 문화정책의 핵심개념으로 문화 복지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인 도시 문화 환경체계는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프로그램 실천, 예술경관, 행정체제로 구성되며 공연장과 같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시설과 자원이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공연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예술 활동의 공간 제공이 1차적 기능이라면, 문화체험과 삶의 질 향상이 2차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연장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공간의 기능 이외에 문화공간이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도시 공공건축으로 변화되고 있다. 공연장은 도시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뿐만 아니라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중심 가치로 문화 예술환경을 조성을 통해 문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관, 박물관,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시설보다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연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으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북경오페라극장,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추며, 홍보효과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둘째로는 공연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달로 이어져 관광산업과 고용증대 그리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셋째는 현재의 공연장들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연극,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미술관, 아카데미, 체육시설 등 다양한 예술과 체육 활동을 통한 교육과 문화복지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거점역할을 한다.

넷째로는 공연산업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듯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변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공연장도 산업이라고 표현할 만큼 경제적 규모나 가치가 커졌다. 그러나 공연산업이 첨단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를 추구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연산업의 구조가 총지출에서 출연자, 연출자, 각 부문별 디자이너, 운영인력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관계로 경비절감에 어려움이 많다. 공연산업이 많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을 외면 할 수는 없다.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연장은 637곳으로 대부분이 실내공연장으로 국내에 건립된 야외공연장 대부분이 공연장 등

록을 하지 않은 채 공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의 부속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야외 공연장은 일반적으로 노천극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천에 무대 등 간단한 시설을 가하여 연극, 무용, 연주회, 콘서트 등을 공연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야외공연장은 실내 공연장과는 달리 자연적 기후조건 아래서 자연을 배경으로 공연하는 장소이므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기계화된 도시생활의 긴장을 풀게 하고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공연자와 관객이 한데 융화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야외무대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교양함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4].

표 1. 공연장 등록규정 및 법규

구분	세부규정	관련법령
등록대상	•공연장 등록 연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하는 시설 중 객석이 100석 또는 그 바닥 면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및 민간 등 모든 공연장	법제2조제4호 법제9조 영제1 조의2 영제8조 규칙제6조 별지제10호서식
시설기준	무대시설(조명, 음향시설 포함), 방음시설 (객석의 전정이 없는 공연장은 제외)	규칙제5조

[표 1]에 나타나듯이 공연장 등록제도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공연예술 향유권 확대와 공연예술계의 창의력 제고, 전문 인력양성 더 나아가 공연예술 세계화를 위한 공연산업 및 전문 인력분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대의 공연예술은 장르간의 융합과 공연 예술 수요의 다양화로 정보통신기술 등에 적응해야 하는 공연예술의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래 건립된 야외공연장들은 이러한 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무대기술 분야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물이 시연되는 공연장의 시각적, 구조적 기능도 빠르게 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연장이 단순히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그 공간을 통해 공연예술이 표현되고 인접예술과의 끊임없는 접목을 통해 또 다른 문화가 생성되는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넓어지게 되었다. 단순히 장소성의 기능을 넘어 지역문화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문화 예술적

환경조성을 통한 이미지를 고양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발산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연장은 실제 공연이 행해지는 무대라는 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게 되는 객석공간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둘이 복합되어 있는가, 교류하는가, 또는 별다른 구분 없는 가에 따라 공연의 형식이나 무대 유형이 달라진다. 공연장의 역할은 관객을 포함하여 공연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 폭넓은 대상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고, 감동을 유발시키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한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인 축적과 전통을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의 전수와 가치 창조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5]. 또한 공공 건축으로서 공연장 시설을 계획할 때 관객서비스 시설과 도시적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기능을 다변화하여 다른 시설과 같이 공유하고 도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공연장은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으며 상징성이 된다. 정보화 산업의 발달로 사회의 가치변동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에 대한 문화 환경조성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공연장과 문화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적 과제가 되었다.

2. 야외공연장의 구조적 특성

현대사회의 문화활동 유형이 동적인 활동으로 변하고 있고 거주지 근처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문화적 욕구와 수용이 증대되면서 지역의 특정구역에 문화지구를 조성하거나 문화적 특색을 살린 문화특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문화지구는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기획력과 재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관광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동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문화지구는 미술관 지구, 문화산업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진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독립기념관, 시도종합문예회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미술관 등 장르별 문화시설들이 조성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야기하였으며 많은 문화공간들이 주민들의 삶과 질에 부응하지도 못했다. 모든 문화적 시설물들이 콘크리트로 건설된 공간문화가 탄생되었다. 전문적인 공간이 아니면서도 규모도 방대하고 필요한 설비에 투자도 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의 건물과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주민에게 따돌림을 받았으며,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1990년 이후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을 앞세워 규모가 큰 대형 복합공연장을 건립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야외공연장도 함께 건립하였다. 그러나 야외공연장은 입지나 환경적 특징을 무시하고 생색내기로 조성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야외공연장은 '야외'와 '공연장'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며 자유로운 공간이다. 야외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내공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국내의 야외공연장은 공원, 문화회관, 유원지, 학교, 연수원 등 그 숫자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 건립되었으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야외공연장에 공연자와 관객을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이나 무대시설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지역의 문화적 교육의 장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야외공연장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나 운영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1차적으로 야외공연장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규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시설 및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야외공연장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야외공연장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속에 들어가 지역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6].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야외공연장은 시설 면에서 대중적 편안함을 주거나 공간 자체로서 입지를 굳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의 각종 시스템부문에 대한 설치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운영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 운영자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야외공연장은 서구

유럽에서 나타나듯이 공연이 진행되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다.

모든 공연장은 관객과 출연자 공간으로 양분화 되며, 관객의 동선이 출연자 동선과 부딪히는 구역이 없어야 한다. 야외공연장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객석에 설치된 좌석의 구조와 의자의 배열 방식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의자의 재질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외공연장에서 중요한 객석은 공연감상 행위를 위한 공연장의 심장부로 작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위치이다. 그러므로 최적의 관람조건에서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안전성을 고려한 좌석의 배치와 간격 그리고 외부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음향 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객석은 일반 객석, 장애인 객석, VIP객석과 자연관객석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객석은 바닥면적이 300m²이상인 경우, 전체관람석의 1% 이상, 관람석이 2,000석 이상의 경우 20석이상의 장애인 객석을 설치하여야 한다[7]. 이외에도 늦게 도착하는 관객을 위한 별도의 좌석을 마련하여 정시에 도착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방해받지 않는 동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연자들을 위한 배려로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공연자 출입구를 설치하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공연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공연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연자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여 무대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자를 위한 분장실은 공연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반드시 무대와 같은 층에 배치하고 연습이나 공연 중 빠른 시간에 의상을 갈아입을 수 있는 퀵체인지룸(quick-change room)을 본무대와 인접한곳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대 근처에 출연자나 스태프의 휴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위한 그린룸(green room)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대는 상부와 하부, 본무대, 측면무대 그리고 뒷무대로 구분되어지고 조명, 음향, 영상, 기계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스태프의 동선은 공연을 진행하거나 관찰하기 위해 백스테이지, 본무대 그리고 객석 영역에 포함된 조정실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공연스태프가 “무대 또는

백스테이지(back stage)에서 객석 뒤에 위치한 조정실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관객과의 층돌이 빈번한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계 동선 처리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8].” 공연자공간과 객석공간에 대한 최선의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 동선 계획은 극장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야외공연장들의 이동 동선의 구조는 위와 같은 계획이 전혀 무시되었다. 야외공연 관람객들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프로시니엄(proscenium)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돌출무대나 원형무대는 공연자가 무대를 활용하는 형태에 따라 시각선에 영향을 받아 관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실내 대공연장의 경우 공연관람을 위한 2차 시거리 허용한도가 38m인데 반해 야외공연장 대부분이 한도를 초과하여 공연자와의 교감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있다. 객석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데 무대나 객석의 형태에 따라 관람객의 반응이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현재 건설된 많은 공연장이 프로시니엄 형태에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야외공연장이 객석규모에 대한 집착현상으로 분석되며, 관람객을 위한 수용인원이 공연장의 운영적 측면이나 홍보효과와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대예술의 전달효과 측면에서 볼 때 관람객을 위한 적정한 가시거리를 고려한 계획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야외공연장은 자연 기후조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연적 조건이 입지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객석에 습기가 차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올 수 있는 곳이 좋으며, 무대를 향해 10°~15°의 경사를 가진 장소라야 시각선에 방해받지 않는다. 무대는 동북향으로 설치해야 태양광선이 무대나 관람석에 직접 비추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대에 밝음과 어두움에 대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 조사대상이 된 많은 공연장이 체육공원, 유적지, 문화단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발을 위해 끼워 넣기식 건축물의 형태로 공연시 실제 중요한 시설보다는 외형적인 미관에 치중한 공연장도 많았다.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뒷벽을 콘크리트로 덮어놓고 온통 흰색으로 칠해

놓은 공연장이 대다수로 안무자나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 주변에 상가건물을 짓거나 콘도 또는 편의시설들을 장기적인 계획 없이 건설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더욱 시급한 것은 야외공연장 부근에 대형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이 조사되었다. 실내공연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무한한 상상력이 야외무대라는 환경에서 창출될 수 가 있으며, 실내의 극장처럼 극도의 엄숙함도 요구당하지 않는다. 야외라는 자연적인 공간 환경창조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무대체험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야외공연장의 디자인에 관한 예술성 측면을 보면 유럽과 구미의 중심 국가들을 오래 전부터 공공건축의 디자인 패러다임(paradigm)을 산업적 가치에서 문화적 가치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였다. 공공건축물은 도시 브랜드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큰 축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와 디자인 행위가 결합한 구조로 지역 내의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외공연장 디자인 설계시에 자연적 특성이나 특별한 형태는 모두 설계상의 중요한 포인트로 그 특징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객석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쾌적한가 아닌가는 공연장의 위치에 크게 관련되므로 설계와 건축을 통해 공연의 질과 내용에 관련성이 있는 각 부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연장 외부의 자연광과 인공 빛에 의한 예술성도 고려의 대상으로 자연경관에 대처할 수 있는 재료선택과 색채사용, 내부를 구성하는 디자인적 요소를 조설하여 미적인 쾌적함을 줄 수 있는 문화시설로의 이미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공연장은 자생적이지 못하고 서구건축을 복제하고 공연장 외관의 개성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그로 인해 국내의 많은 공연장의 규모가 지역의 인구나 행사의 규모에 비해 너무 방대하며 그 규모에 비해 실제로 필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어느 공연행사에 대하여도 전문적이거나 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기획 운영에도 미비한 실정이다. 야외공

연장 건축물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물이 되어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고 단지 기념물 조형물로써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며 기획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년에 고작 몇 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상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의 공연공간의 외적인 측면으로 양적인 확충과 함께 다양화, 전문화, 다목적화, 융복합화 등 실용적 측면을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단순한 공연시설 차원을 넘어 공연자, 안무자, 연출자, 관람객, 지역주민 등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거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야외공연공간은 무엇보다 공공성과 지역성, 창조성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기획을 통해 끊임없이 활용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III. 야외공연장의 法制

공연예술이 실현되는 실내의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공연장 건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관련된 법체제도 변화하고 있다. 문화 관련 법령의 주요 목적은 첫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는데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며 셋째,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기능 보장 및 언론과 국민 간의 건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 창조력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9]. 현재 국내에 건립된 야외공연장의 정이나 규정이 미비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외공연장의 구조나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도 실내공연장과 같은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공연법에 야외공연장의 범위가 포함되면서 행정적 지원과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공원이나 문화예술회관 내에 속해 있어 사용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지속적

인 관리 운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연장이 많다.

1. 공연법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로는 ‘공연법’이 있으며,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공연법은 공연예술의 자유보장, 건전한 국민오락 육성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군사 정권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연신고제, 각본심의, 공연정지 등 공연예술의 자율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 이후의 개정과정에서도 창작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율성의 보장 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시절부터 문화예술의 공공성 유지 및 공연물 심의기구로서 공연윤리위원회,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일부 변화되어 왔지만 공연자의 등록 및 각본 심의 제도 등과 같은 규제가 잔존하여 공연예술의 자유보장과 공연예술 진흥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10]. 1981년에는 소규모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극장을 공연장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시발점으로 조금씩 변화되다가 1999년 공연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1998년 12월 102명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공연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9년 1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공연법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공연자 등록제의 폐지
- ② 국가 및 지자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 의무 부과
- ③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폐지
- ④ 민간공연장의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나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근거 신설
- ⑤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공연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하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 ⑥ 공연장 설치 허가제 폐지하고 등록제 도입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게 함
- ⑦ 사진 각본심의제 폐지. 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한 벌칙 강화
- ⑧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의무화하고,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장 이외에서도 일정수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개최 시에는 재해예방조치 계획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함
- ⑨ 무대예술전문인 자격부여 및 의무 배치
- ⑩ 공연자·공연장 경영자 및 관람자 준수사항을 삭제, 법률로 규율하기 보다는 공연자와 경영자 및 관람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함

위에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각종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육성 정책의 법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문화·교육·복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BTO방식 위주에서 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문화부도 문화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BTL 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11].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외국 공연물의 공연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대

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12].

그 밖에 동 법률은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및 그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9]. 2006년에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야외공연장을 등록 대상에 포함 시켰다.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설치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3].

재해 대처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 표기)
- ②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이는 야외공연장을 실내 공연장과 같은 차원에 두고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

현재 감성문화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연예술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산업적 발전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표 2. 공연장에 대한 공연법 제정 및 개정 참조 / 재구성[14]

연 도	내 용	비 고
1961. 12. 30 공연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예술의 자유보장 및 건전한 국민오락 육성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관람물 등 유료 공연 ◦공연자 등록,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 신고, 관람료 인가, 외국인 국내공연허가,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 준수사항, 공연자 및 공연장 감독, 공연정지 명령 등 규정 	5·16 군정시대 문화정책 생성기 (1961~1963)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결)
1963. 3. 1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 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 공연자격을 등록 공연자로 제한, 공연자 등록 취소규정 신설 ◦사진 각본심사제 	
1966. 4. 27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공연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임시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준공검사 ◦공연을 실연심사 신설, 선전물 규제, 외국인 국내 공연 허가제, 방송에 의한 공연도 규제대상에 포함, 등록청에 공연자문위원회 신설, 업종별 단체설립 등 	박정희 정부 문화정책기반 조성기 (1963~1981)
1975. 12. 3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자 등록 문공부로 환수, 공연자 등록 2년 유효기간 폐지 ◦공연윤리위원회 설치, 무대예술에 대한 국고, 지방비 보조 	
1981. 12. 3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자등록 요건 완화, 관람료 인가제 폐지 ◦연극전문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을 허가대상에서 제외 ◦공연장 설치시 건축법과 중복 규정 삭제 등 	전두환, 노태우 정부 문화정책 확대기 (1981~1988)
1995. 12. 29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자 등록업무를 시·도 위임에서 이양으로, 공연장 설치 허가 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의무 부과 	문민정부 문화정책 성장기 (1993~1998)
1997. 4. 10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윤리위원회 폐지 및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설치 	
1999. 2. 8 공연법 전면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폐지 : 공연사전 심의제, 공연자등록제, 공연신고제(영화 제외), 공연장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 17건 ◦규제완화 : 공연장 설치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 6건 ◦공연예술육성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 (2000년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제도 실시) -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국고보조 및 문예진흥기금 융자근거 마련 - 공공 공연장 민간위탁 및 지원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계획수립·시행 의무화 ◦공연장 재해 예방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석500석 이상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 진단 의무화 - 5,000명 이상 관람예상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설치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발전기 (1998~현재)
2001.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 체육공원 내에서도 공연장 설치허용 ◦등록대상 공연장 확대 : 객석수가 100석 이상 공연장 (중전 500석) ◦공연장 안전 및 재해 대책 강화 	국민의 정부 1998~2002
2002.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의 정의에서 '영화' 제외 영화진흥법으로 이관 (공연신고제도 폐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공연장을 공연장 등록 대상에 포함, 재해대처 계획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 사군구청 장으로 변경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재해대처 계획에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하도록 함 ◦등록공연장 기준완화 :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에 미달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않는다. 	2003~현재

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에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80년 1월 법률 제3256호로 제정 공포된 전문 7장 34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12

월 '도시공원법' 규칙을 개정하여 체육공원 내에도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고 내용도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내에 건립되면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6].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표 3. 공원시설의 종류 / 재구성[14]

용어	정의	시설분류	시설의 종류
공원 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조경시설	◦화단·분수·조각, 폭포 등
		휴양시설	◦야유회장 및 야영장,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유희시설	◦시소, 모노레일, 뉴시터, 모험놀이장 등
		운동시설	◦테니스장·수영장·공도장, 자연체험장 등
		교양시설	◦식물원·동물원·야외극장·미술관·문화회관 등
		편익시설	◦전망대, 음수장,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쓰레기통 등
		그밖의 시설	◦한국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표 4. 도시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의한 분류(제15조) / 재구성 [15]

세분 및 규모	생활권 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공원	주요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모지공원	모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모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과 변경을 통하여 공원시설로 결정이 된다[표 3]. 2005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법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안에서, 공원이나 녹지의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축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하며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표 4][14].

이는 공원내에 건립된 공연장 운영방식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을 종합 관리적 측면에서는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시설관리 비용대비 예술적 효과성이 있는 문화사업 추진에는 일정부분 제약이 따른다.

야외공연장이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설치기준, 녹지

유형, 구조, 운영, 이용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게 된다. 근래에 많은 문화시설이 공연장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아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공원 내의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화 예술행사의 잠재성을 고려한 법적제도화 장치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또는 독립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으나 문화체육에 관한 시설 관리적 측면은 물론 예술기관으로서 활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건축법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 목적성이 무엇이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극장 설계 시, 건축가들은 극장의 성격과 사용자들이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공간을 구성한다. 야외공연장을 건축할 때 장기적인 운영

표 5. 문화시설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별표 전부개정2007.9.10 대통령령제0252호 제조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2009. 12.29) 제19~20조.[11]

공연시설	공연장	종합공연장 : 시·도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지역문화복지시설	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문화의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7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시설

표 6. 야외공연장 조경설계기준 [16]

구분	설계기준
기능 및 배치	(1)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공연설비 및 기구운반을 위해 비상차량 서비스 동선에 연결한다.
	(2) 공연 시의 음압레벨의 영향에 민감한 시설로부터 이격시킨다.
	(3) 다른 용도의 활동공간이 무대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영역설정 및 부지조성	(1) 객석의 전후영역은 표지이나 세밀한 몸짓을 이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생리적 한계인 15m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적으로 무대가 보이는 각도(객석의 좌우 영역)는 104°~108° 이내로 설정한다.
	(3) 객석의 바닥의 기울기는 후열객의 무대방향시선이 전열객의 머리끝 위로 가도록 결정한다.
	(4) 객석에서의 부각은 15°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30° 까지 허용된다.
객석열과 세로통로 배열	(1) 원호배열의 경우 기구상 배열이 가능한 원호의 반경은 6m 이상으로 한다.
	(2) 객석의 좌우길이 길 경우 세로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이 때 세로 통로는 객석열에 대해 가능한 직각방향으로 배열한다.
객석의 배치	(1) 좌판 좌우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40~45cm 이상으로 하며, 등의자의 경우 45~50cm 이상으로 한다.
	(2) 좌판의 전후 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65cm 이상으로 하며, 8인 이내의 연식 등의 자형은 85cm 이상, 그리고 12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 형은 95cm 이상으로 한다.
	(3) 좌판의 연결수량은 양측에 세로 통로가 있을 경우 8개 이하 (전후 간격이 95cm 이상일 경우는 12개 이하)로 하며, 한쪽에만 세로통로가 있을 경우는 4개 이하 (전후간격이 95cm 이상일 경우는 6개 이하)로 한다.
	(4) 세로통로의 폭은 객석이 양측에 있을 경우 80cm 이상으로 하고, 한쪽에만 객석이 있을 경우 60cm 이상 100cm 이하로 한다.
	(5) 가로통로의 폭은 관객의 흐름을 정체 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로통로보다 넓어야 하며, 객석 15열 (전후간격 95cm 이상일 경우에는 20열) 이내마다 유동 폭 100c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주층의 선단 부분에도 설치한다.
	(6) 좌고는 일반의자 설계기준에 따르며 단의 총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3m 마다 가로통로나 그 대용물을 설치한다.
무대의 설치	(1) 무대의 규격은 무대의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급적 다목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구조 및 안전	(1) 지반 지지력과 바닥 콘크리트 허용응력은 바닥적재하중 270kg/m ² 이상으로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하부의 구조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제 2장(콘크리트포장의 구조)에 따른다.
	(3) 객석을 흙 쌓기 지반 위에 조성할 경우에는 적재하중을 감안한 다짐도에 따라 균일하게 다진 사면 위에 설치한다.
공연장의 시설기준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획이나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의 건립된 공연장의 외관만 참고하여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많은 야외공연장이 도시공원에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매우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 내, 외부의 구조적 설계와 각종 시스템이 공연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의 연결고리 부조화로 인해 실제 공연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활용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로 건축물을 분류하고 있는데, 공연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고, 그 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17].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조경설계기준”의 야

외공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장 외부의 부지 선정에 대한 내용부터 내부의 객석 배열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건축법 제 32조 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야외공연장 주변 시설 및 설치물에 대한 적용 등도 추가로 규정되어있다

[표 6]의 내용에 야외공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다목적 공연장의 형태로 유도하고 있어 공연이나 행사 내용전개 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①이용자의 집·분산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공연 설비 및 기구운반을 위해 비상차량 서비스 동선에 연결한다. ②다른 용도의 활동공간이 무대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③객석의 전후영역은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이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생리적 한계인 15m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객석의 바닥의 기울기는 후열객의 무대방향시선이 전열객의 머리끝 위로 가도록 결정한다. ⑥좌판 좌우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40~45cm 이상으로 하며, 등의자의 경우 45~50cm 이상으로 한다. ⑦무대의 규격은 무대의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가급적 다목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무대 세트나 조명, 음향 등 각종 장비 및 장치의 하역과 적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대부분의 야외행사에 대한 장비나 시설들이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원에 의한 이동보다는 지게차나 포크레인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차량의 이동을 위한 통로가 비상차량 서비스 동선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용도로 건립된 공간이나 자연적 지형지물은 공연예술에 있어 매우 좋은 배경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아파트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무대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나 고공이나 다리, 팔각정, 분수 등 다른 활동공간이라는 법적 규제를 만들어 놓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객석 바닥의 기울기도 성인들의 신장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앞좌석에 앉은 관람객으로 인하여 시각적 방해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객석 전후의 한계를 15m로 규정지어 놓았으나 이는 소규모 공연에 해당되고 있으며 현재 공연이

나 행사의 대형화로 인하여 무대에 비해 객석의 크기가 매우 넓고 길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LED 전광판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급적 다목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 환경과 경향의 변화,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황적 현실과 공간의 개방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된 것이라 하겠다. 야외공연장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기준은 단지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무대설비, 전기음향, 조명시스템, 소방설비 분야가 유기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무대시스템은 작품에 따라 가변성을 갖고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나 시공 초반부터 등한시 되어 왔다. 야외공연장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할 때에도 건축적 상황과 시각적 상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야외 공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술적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술평가 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야외공연장이 운영되도록 법적제도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별 기술평가 위원단의 구성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분야별 기술평가 위원단

분야	인원	비고
연출가	2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예술분야
안무가	2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대디자이너	2	학계 및 프리랜서 디자이너
무대조명	3	무대조명전문인 1급 자격증 취득자로 현장경험 또는 공연장 근무 20년 이상
무대음향	3	무대음향전문인 1급 자격증 취득자로 현장경험 또는 공연장 근무 20년 이상
무대기계	3	무대기계전문인 1급 자격증 취득자로 현장경험 또는 공연장 근무 20년 이상
무대안전	2	무대기술자격 검정원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분야의 평가위원을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 취득자로 현장경험 또는 공연장 근무 20년 이상으로 한 것은 공연자나 관람객의 측면에서 확실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갖춘 무대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형식적인 자문수준이 아닌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야외공연장

설계 시점부터 위와 같은 현장예술 전문인들이 공연장 설비와 기술시스템 구축에 직접 참여하여 활용도 높은 야외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 결 론

공연예술의 산업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 장르간 융합 및 다문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감성과 창의성 문화 시대에 공연 예술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 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형뮤지컬과 콘서트 등 관객 선호도가 높은 장르의 대폭적 확산과 경쟁력 있는 장르를 중심으로 한 공연단체 증가 등 공연 예술의 산업화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연극의 영화화, 영화의 뮤지컬화 등 공연과 영상예술의 융합과 다양한 교류 그리고 매체간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FTA체결에 따른 세계경제의 글로벌 속도가 빨라지고 공연예술의 국제 진출 및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다. 주 5일체제의 정착 등에 따른 문화예술이 안정적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건립된 대다수의 야외공연장에 대한 기초 조사가 미흡했으며 관광, 문화단지, 공원조성을 사업을 위한 끼워넣기식 건축물의 형태로 공연시 실제 중요한 시설보다는 외형적인 미관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조사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중에 특이한 사항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들이 있는 공간, 바지회나 벼룩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원내부에 위치한 공연장이 주 동선이기 보다는 주변의 수변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운동이나 산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역민 문화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의 건립과 지역문화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외라는 공간이 개방적 공간으로 환경적 제약을 받지만 발전가능성이 높는데 비하여 운영의 미흡

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구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국내 야외공연장은 ①공연장의 입지적 조건, ②공연장의 외형적 디자인, ③무대규모 및 조명 및 음향 등 전문적 시스템구축, ④지속적인 훌륭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실행, ⑤꾸준한 관리 및 운영이 된다면 세계적 문화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현대사회의 공간구조가 전자정보의 통신망에 의해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특별한 변화과정을 겪지 않고 외국무대의 외형적인 형태 도입과 조형미만이 강조된 국내의 야외공연장이 무대의 많은 기술적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된 공간개념으로는 관객의 눈높이와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다.

모든 야외공연장의 설계나 건축이 건축법과 공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연장이라는 건축물의 특성상 설계자나 관련 행정담당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보다는 공연예술 창작 경력이 많은 분야별 기술평가 위원단의 구성과 평가를 통해 건립되는 공연장 건축물에 대한 분명한 법적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내 실내의 공연장 건립의 일반적 추진형태는 문화관련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건설담당부서에서 건립 추진반을 구성하여 공연장을 건립한 후 공연장 관리운영 부서에 이관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의 행정권 안에서 다듬어진 대부분의 국내 야외공연장들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 및 건축된 관계로 현대 공연예술이 추구하는 다양성에 따른 창의적 작품을 구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동선, 비슷한 형태의 무대구조나 기계, 조명장비 시스템들이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인계를 맡은 관리부서원들이 시스템이나 공간의 기능적 특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안고 공연장운영을 하게 된다. 체육공원 내에 건설된 대다수 지자체 야외 공연장들이 공간 활용에 대한 목적성이 결여되거나 전시행정의 부산물로 추진되어왔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 위원단을 통해 검토되는 야외공연장은 설계자나 또는 공연예술에 대한 비전문가들에 의해 건축된 공연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대의 기술적 부분인 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의 실제적 운영과 설비에 대한 실효성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체육공원 내에 공공성을 띠고 건립되는 공연장이 운영 실무자나 공연분야 전문가들이 기본설계부터 참여하게 될 때 건축의 외형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매체의 중요한 무대설비 전반에 걸쳐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이재명 역, *연극 이해의 길*, 서울: 평민사, 1995.
 [2] 유민영, *한국근대극장 변천사*, 서울: 대학사, 1998.
 [3] 문화체육관광부, *200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2009.
 [4] 최철주, *무대디자인*, 미진사, 1997.
 [5] 김성기, *공연장 공간형식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6] 윤혜진,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야외공연장의 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년도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공연장 조성 매뉴얼*, 2008.
 [8] 인혜란, *극장의 동선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10] 신재규, *공연법제의 변천과 발전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 김현주, 최혜자, 장지영, 유동진, 박소은, *문예회관 운영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08.
 [12] 이장원, 임지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0권, 제6호, pp.258-274, 2010.
 [13] 이우섭, 박수홍,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공연장 안전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9.
 [14] www.moleg.go.kr

[15] www.mltm.go.kr
 [16]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 기문당, 2007.
 [17]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저자 소개

이 성 호(Sung-Ho Lee)

정회원



- 1993년 : Paris VIII 대학교 공연 예술학과(licence)
 - 1995년 : Paris VIII 대학교 공연 예술학과(Maitrise)
 - 1997년 : Paris VIII 대학교 공연 예술학과(DEA)
 - 2011년 :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예술경영전공 박사과정수료
 - 2001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공연영상미술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무대조명, 공연/전시, 이벤트&축제, 문화산업 및 문화기술 정책

김 말 애(Mal Ae Kim)

정회원



- 1971년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B.A)
 - 1973년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석사(M.A)
 - 2001년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경영학과 석사(MBA)
 - 2005년 :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무용학 박사(Ph.D)
 - 1976년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 무용학부 교수
 - 2007년 ~ 현재 : 사단법인 우리춤 협회 이사장
 - 2011년 ~ 현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관심분야> : 공연예술, 한국무용, 예술경영, 안무법, 문화정책